

2020년 제7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313-10 번지 (종교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0. 8. 20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대한예수교장로회 가나안교회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313-10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2,400.90 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336.93 ㎡	건폐율	55.68 %	층수 지하 : 3층/지상 : 6층
	주 용 도	종교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제7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29-12 번지 (생활숙박시설, 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심의일자	2020. 8. 20.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한국자산신탁(주)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
	지 번	29-12	관련지번
	대지면적	10,263.0 m ²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중심상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6,062.14 m ²	건폐율 59.07 % 층수 지하 : 4층/지상 : 44층
	주 용 도	생활숙박시설	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	144.9 m	용적률 799.87 % 연면적 합계 118,374.49 m 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(구조)분야	○ 지하안전영향성 평가를 착공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득하고 시공할 것	
	(토질)분야	○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항에 대한 보완 후 관련 기관과 재협의 절차를 거쳐서 공법 변경에 대한 안전한 설계 절차를 완료한 이후, 건축위원회 심의(소위원회) 혹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관련 기관과 재협의를 결과를 바탕으로 재의결이 필요함	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제7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588-1 번지 (항만시설(참고)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심의일자	2020. 8. 20.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로지스폴(주)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
	지 번	588-1	관련지번
	대지면적	16,818 m 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중심상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8,455.87 m ²	건폐율 50.28 % 층수 지하 : 지상 : 4층
	주 용 도	항만시설(참고)	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	29.1 m	용적률 109.51 % 연면적 합계 18,417.74 m 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(구조)분야	○ 풍하중 작용시 시공안전성 검토를 재확인 ○ PEB시스템에 대한 국내 강구조기준 적용하여 검토하여 안전성 확보하도록 할 것(변위, 설계강도, 소요강도 등)	
	(토질)분야	해당없음	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